##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8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 박대출·김상훈·이종욱

송석준 • 박정훈 • 박수민

김도읍 • 송언석 • 김태호

박정하 • 이달희 • 최은석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입찰·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·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 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,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 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,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,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 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 조달업체의 불 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,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 임(안 제21조제1항, 제21조의2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####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우"를 "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 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"으로, "이 조"를 "이 조 및 제21조의2"로 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2(수요기관의 의무)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의 제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(이하 "부당한 요구등"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, 제도개선 권고,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.

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- 2.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 피한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)	제21조(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)
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	①
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행위(이하 "불공정 조달	
행위"라 한다)에 대하여 신고	
를 접수하고, 그 신고 내용의	
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<u>경우</u> 소	<u>경우</u> 또는
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	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
대자,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	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
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	<u>는 경우에는</u>
서를 제출하는 자(이하 <u>이 조</u>	
에서 "계약상대자등"이라 한다)	
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	
나 사무소・사업장・공장 등을	<u>이 조 및 제21조의2</u>
방문하여 시설·서류 등을 조	
사하게 할 수 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21조의2(수요기관의 의무) ①

제35조(과태료) <신 설>

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조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 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의 제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 구(이하 "부당한 요구등"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 당한 요구등에 대한 신고가 접 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 요기관에 시정요구, 제도개선 권고,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.

제3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 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
- 2.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 해 또는 기피한 자
-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- 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<b></b>
•